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07시 35분
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농업정책과	3
비료생산업폐업신고	3

비료생산업폐업신고

2017.07.04 조회수 254 등록자 박지연
10:40

✓ 민원사무명	비료생산업폐업신고
✓ 민원내용	비료생산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✓ 관계법령	비료관리법 제11조4항, 시행규칙제8조
✓ 구비서류	비료생산업등록증 1부
✓ 처리부서	농업정책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여수시 농업정책과
✓ 수수료	없음
✓ 처리기간	즉시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신고서작성 - 처리
✓ 기타참고사항	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p> [별지 제12호서식] 비료생산업(폐업, 휴업) 신고서.hwp (170 hit/ 40.0 KB) ↓</p> <p>미리보기</p>
--	---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